I SEOUL U

함께서울

하도급 부조리 이제그만!!



서울특별시

불공정 피해 예방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…
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불공정 피해를 예방합니다.

불공정 계약조항과 특약은 무효

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변경 불인정, 상대방에게 책임전가 및 정당한 이익침해 등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항과 특약은 무효입니다.

추가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!

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

-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· 변경공사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

처벌규정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, 제25조의3

추가 · 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(발급)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(하도급 금액 2배 범위)이 부과됩니다.